

검토보고서

2024. 6. 18.(화)

순서	검토안건	제안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감사담당관 소관】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1. 안 건 명

-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24년 5월 24일(금)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24년 5월 28일(화)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검토보고]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I 마포구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잉여금			
				소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순세계 잉여금
합계	980,191,776,153	1,022,265,680,639	834,649,878,669	187,615,801,970	60,079,829,905	23,477,303,500	104,058,668,565
일회 반계	910,343,096,597	949,347,168,528	786,066,512,794	163,280,655,734	50,594,960,649	23,200,450,655	89,485,244,430
특회 별계	69,848,679,556	79,918,512,111	48,583,365,875	24,335,146,236	9,484,869,256	276,852,845	14,573,424,135

II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감사담당관	8,220,000	8,519,700	8,519,700	0	100%

※ 징수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나.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감사담당관	168,607,000	143,732,190	-	-	24,874,810	85.24%

※ 집행률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집행잔액	집행잔액원인별 금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감사담당관	24,874,810	2,068,820	2,149,000	0	0	20,656,990	0

라. 집행률 저조 사업 현황

【집행률(지출액/예산현액) 70% 미만 기준, 단위 : 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감사담당관 (2건)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8,570,000	5,121,140	0	0	3,448,860	59.75%
	공익신고 운영	3,850,000	1,636,560	0	0	2,213,440	42.50%

마. 다음연도 이월(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 : 없음

바.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1) 예산 이용 : 없음
- 2) 예산 전용 : 없음
- 3) 예산 이체 : 없음

Ⅲ 검토의견

1.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851만

9,700원으로 징수율은 100%임.

-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6,860만 7,000원이며, 지출액 1억 4,373만 2,190원으로 집행률은 85.24%임.
- 집행잔액은 2,487만 4,810원이며, 집행잔액원인별 금액은 보조금 정산액 206만 8,820원 예산절감액 214만 9,000원, 지출잔액 2,065만 6,990원 임.
- 집행을 저조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70% 미만인 사업으로 집행률이 59.75%인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등 총 2건임.
- 다음연도 이월(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 없음.

2.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결산

- 해당사항 없음

3.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2023년 감사담당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1개 정책사업 목표와 부조리예방을 위한 행정감사 실시 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한 결과 100%를 달성하였음.
-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과 공익신고운영 사업은 계속적으로 집행을 이 저조하며 특히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은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

은 얼마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예산이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고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율이 3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며 선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인 바, 2025년 사업예산 편성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업무추진비 감액이나 불용액의 최소화 조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감사담당관은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감사하여 우수 사례에 대해 적극 발굴·전파하고 위법 또는 부당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부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감사기능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직원의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 지 살펴보아 직원들의 인권보장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적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단계보다 다소 소홀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¹⁾에 따른 재정수지균형의 적정성, ‘예산 한정성의 원칙’²⁾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³⁾에 따른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 명시·사고이월, 예산의 초과지출

1)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간의 상호용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하는 개념.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게 됨.**

3)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의하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②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결산감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및 권고 요구사항에 대한 소명과 이행이 있어야 할 것임.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감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